

#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

## 일부개정법률안

### (윤한홍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2168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18. 2. 27.

발의자 : 윤한홍 · 박성중 · 김규환  
문진국 · 권석창 · 정갑윤  
김석기 · 최연혜 · 이명수  
곽대훈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견기업자의 신청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, 고시인 「중견기업 확인요령」은 허위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와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확인을 즉시 취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.

그러나 중견기업 확인의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,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업은 물론 기업에 고용된 인력, 관계 협력기업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법률의 명시적인 수권이 필요함.

이에 중견기업 확인 취소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, 행정청에서 확인의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기업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청문 절차 규정을 두려는 것임(안 제25조제1항·제2항 및

제25조의2 신설).

##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 제목 중 “확인서의”를 “확인 및 확인서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확인하는 서류(이하 “확인서”라 한다)를 발급할 수 있다”를 “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확인서를”을 “확인을”로 한다.

이 경우 그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중견기업 확인의 취소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5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견기업임을 확인받은 경우
  2.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의 확인을 취소하

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p>제25조(중견기업 <u>확인서의</u> 발급)</p> <p>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견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<u>확인하는</u> 서류(이하 “확인서”라 한다)를 발급할 수 있다. &lt;후단 신설&gt;</p> <p>②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<u>확인서를</u> 받고자 하는 중견기업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br/>&lt;신 설&gt;</p> | <p>제25조(중견기업 <u>확인 및 확인서</u>의 발급) ① -----<br/>-----<br/>----- <u>확인하여</u><br/><u>그 결과를</u>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그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-----<br/><u>확인을</u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5조의2(중견기업 확인의 취소)</p> <p>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5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.</p> <p>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</p> |

법으로 중견기업임을 확인받은 경우

2.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